

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

접수번호		접수일	처리기간 2일
신고인	성명 (대표자)	한글	생년월일
		한자	(법인등록번호/외국인등록번호)
	상호 또는 명칭	사업자등록번호	
	영업소 소재지	(전화번호:)	

변경 내용			
구분	변경 전	변경 후	그 밖의 사항
1. 상호 또는 명칭			
2. 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)			
3. 영업소 소재지			
4. 자본금			
5. 전문인력 보유 현황			
6. 사무실 보유(면적)			
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신고인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
특별자치도지사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-

유의사항

등록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67조 제3항제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처리절차



신고인
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, 시·군·자치구